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5년차)
주관기관	인제군
실행주체	인제군산림조합

2022. 12. .

SJ 산림조합 인 제 군 산 림 조 합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3년도 - 5년차)

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5년차)

2) 목　　적

- 조림사업 실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림 조성
- 현재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내 Ⅳ~Ⅴ영급이 대부분으로 가꾸어야 할 산림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숲가꾸기사업 실행으로 향후 목재생산을 통한 수익창출 기대
- 임도신설(간선, 소형(작업))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임산물 수확시 인건비를 절감하며 산주의 소득 창출기대 및 단지내 임도 유지보수를 통해 상시 활용 가능한 임도 노선 유지
- 한국형산림인증을 통한 인증받은 목재의 유통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재고,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산림경영자체가 산주에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 소득 창출
- 산림 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

3) 사업범위 :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사업의 실행 【사업 실행에따른 실시설계 및 회계정산용역의 대행(외주사업으로 실행), 직접사업의 실행】

4)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신청액

- 사업기간 : 2023. 01. ~ 2023. 12.
- **소요예산 : 757,777천원**

  ※ 예산과목 : 민간대행사업비(402-03)

5) 기대효과

- 조림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는 경제림 육성
-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경제림 육성
- 임도시설을 통한 사유림 경영기반 확충 및 잣수확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 소득창출 기대
- 한국형산림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으로 선도단지 공정성 및 투명성 재고 및 신규 소득 창출 도모
- 특화임산물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선도산림경영단지를, 2023(5차) 년도 사업으로 기반시설조성(임도), 임도보수사업, 풀베기사업,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조성 등을 실행하여 10년 내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유림경영단지 조성

2) 추진체계 및 역할 : 산림청(총괄기관), 강원도 인제군청(주관기관), 인제군산림조합(전문경영주체)

3. 사업내용

1) 기본계획에 반영된 직접사업 실행【임도(간선,작업), 숲가꾸기사업, 특화임산물재배단지 조성 등】, 회계정산용역의 대행, 사업관리경비의 집행.

- 사업대상지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선도산림경영단지 일원

2) 2023년도(5년차) 세부 추진계획

구분(세부사업별)		추진시기	사업량	비 고(실행방법)
사업관리비		2023. 01 ~ 12.	1식	승인된 사업계획내에서 지출 후 정산
외주사업비		2023. 01 ~ 12.	1식	-사업비 정산용역(외부회계법인) -단지 직접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직접사업비의 20% 숲가꾸기사업 발주 ※사업계획 내에서 지방계약법에 준하여 수의계약, 입찰을 통한 사업추진 후 정산
조림	경제수			
	임도변			
통합숲가꾸기				
풀베기사업		2023. 05 ~ 09.	48.8ha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사업수행, 감리비(인제군)별도 발주
임도	간선임도	2023. 03 ~ 09.	0.64km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사업수행, 감리비(인제군)별도 발주
	유지보수	2023. 05 ~ 08.	1식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사업수행, 감리비(인제군)별도 발주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조성		2023. 04 ~ 06.	1.0ha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사업수행,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조성(산마늘)
기타 부대공사		2023. 01 ~12.	1식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시범조성(표고) -경영체조직, 입지선정 진행

※ 당해연도(5차년도) 사업실행은 기본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기초(면적, 및 사업비)로 실행하며,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 시 가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하여 사업실행.

※ 직접사업비는 설계금액의 88%이내 편성하여 정산 후 예산잔액 발생 시 다른 사업을 추가 실행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

3) 2023년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 일정

구분	사업별	사업량	세부추진일정				비고
			대상지 확 정	설계	실행	정산	
조림							
숲가꾸기	풀베기사업1차	24.4ha	2022	2023	5~6월	연중	5개필지(각2회) 산214-1(3.1ha) 산16-1(5.9ha) 산8(2.3ha) 산181(7.3ha) 산186(5.8ha)
	풀베기사업1차	24.4ha	2022	2023	8~9월	연중	
기반시설	간선임도신설	0.64km	2022	2022	3~9월	연중	2022년 사전설계 2023년 사업추진
	임도유지보수	1식	2023	2023	5~8월	연중	임도보수사업
	소계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조성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조성	1.0ha	2022	2023	8-12월	연중	산마늘재배단지 산248
기타 부대공사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시범조성	1식	2023	2023	2023		표고재배단지 사업비미편성

4) 2023년도(5차년도) 통합사업비 산출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엑셀 파일로대체

※ 단지조성에 따른 본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 직접사업비는 개별사업정산하며, 대행사업관리비 중 간접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인건비, 사업관리경비는 2023년도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

* 사업집행계획서(2023년/5년차)

O 사업기간 중 여건변화로 과목 간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회계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
O 직접사업비는 설계금액의 88%이내 편성, 정산 후 예산잔액 발생시 다른 사업을 추가 실행하여 경영효율성 향상.

(단위 : 천원)

항 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사업관리비				192,897	
1.1. 인건비(A)				118,842	
-직접인건비		2		104,431	2022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간접인건비		직노×율	13.8%	14,411	2022년 하반기 토목공사제경비요율 기준적용
1.2. 사업관리경비(B)				63,136	
(1) 여비교통비				4,800	선도경영단지 예산편성기준 적용
- 현지조사여비	일	480	10	4,800	20일*24개월(관내여비 반액적용)
(2) 차량비				13,012	
-렌트비	대·월	12	734	8,808	임차료
-유류대	원/L	2,400	1,752	4,204	50L*4회/월*12개월(22년 조달청 단가적용)
(3) 소모품비	식	1	6,000	6,000	사무용품 및 조사소모품 외
(4) 교육훈련비	회	10	150	1,500	실무교육 외 워크샵참석
(5) 도서인쇄비					
- 각종설명회자료	회				
- 도서구매 및 제본비	식				
(6) 홍보비	식	1	5,060	5,060	홍보입간판, 우편료, 기타 홍보관련
(7) 회의비				3,064	산주·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 현장토론회경비 등
- 산주·운영협의회 외	회	4	766	3,064	
(8) 대장발급수수료	식				
(9) 보조인력인건비	인	297	100	29,700	26일(주휴수당포함)*11개월11일*100,000(일비)
1.3. 일반관리비(C)		(A + B)	6.00%	10,919	2022년 하반기 토목공사제경비 요율 기준적용
1.4. 부가가치세(D)		(A+B+C)			부가세 면세
2. 외주 사업비				34,400	
2.1. 세부설계용역비	식	1	30,000	30,000	실시설계용역
2.2. 전문가위탁비	식	1	4,400	4,400	회계정산용역
2.3. 부대비	식				
3. 직접사업비				530,480	
3.1. 기반시설조성사업	km	0.64	204,000	204,000	간선임도신설사업
3.2. 임도보수사업	식	1	64,000	64,000	기개설구간 임도보수공사
3.3. 풀베기사업	ha	48.8	2,100	102,480	21년:3.1ha(2회)+22년:21.3ha(2회)=48.8ha
3.4. 특화임산물재배단지	ha	1	160,000	160,000	특화임산물재배단지 조성(1ha)
3.5. 기타사업	식	1			표고재배단지 시범조성
통합사업비 계				757,777	부대비,감리비(20,000) 미포함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산림청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선도 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 일부개정 알림

1.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책임경영자의 인건비 확정 등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선도 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을 일부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정산 등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도 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 개정(요약) 1부.
2. 선도 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전문) 1부. 끝.

산림청장

수신자 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강원도지사(산림소득과장),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충청남도지사(산림자원과장),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경상북도지사(산림자원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산림보전과장),경상남도지사(산림정책과장),산림조합중앙회장

주무관 김진숙 임업사무관 김영훈 산림자원과장 전결 03/07 전덕하

협조자

시행 산림자원과-1426 (2022.03.07.) 접수 회원지원부-887 (2022.03.09.)

우 3259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 http://www.forest.go.kr

전화 042-481-4044 /전송 042-471-1447 / jin75@korea.kr / 비공개

"남과 북이 함께, 숲으로 하나되는 한반도"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기준단가

(2022년 기준)

인력구분	년 지급액
경영전문가	년 70,265,000원
사업담당	년 58,554,000원

주 1) 본 인건비는 기준금액인 2015년 경영전문가 년 60,000,000원과 사업담당 년 50,000,000원에 매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주 2) 2022년 적용단가는 2021년 적용단가(경영전문가 69,295,000원, 사업담당 57,746,000원)에 2022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 1.4%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2022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2. 4. 25.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직노) x 율			[기타경비] (재+노) x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7	13.8	13.7	8.4	7.6	8.4
	7~12개월 (365일)	13.8	13.9	13.8	9.0	8.3	9.0
	13~36개월 (1095일)	13.8	13.9	13.8	9.0	8.3	9.0
	36개월 초과 (1096일)	13.6	13.7	13.6	9.6	8.9	9.6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9	13.0	12.9	8.8	8.0	8.8
	7~12개월 (365일)	13.0	13.1	13.0	9.4	8.6	9.4
	13~36개월 (1095일)	13.0	13.1	13.0	9.4	8.6	9.4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2.8	12.7	10.0	9.2	10.0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9.0	8.2	9.0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9.6	8.9	9.6
	13~36개월 (1095일)	13.2	13.3	13.2	9.6	8.9	9.6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3.0	12.9	10.2	9.5	10.2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8.1	7.4	8.1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8.7	8.0	8.7
	13~36개월 (1095일)	13.2	13.3	13.2	8.7	8.0	8.7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3.0	12.9	9.3	8.6	9.3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공사규모 (추정가격)	[일반관리비] (재+노+경) x 율		[이윤]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공사	(노+경+일) x 율
5억 미만	6.0	6.0	15.0
5억 - 30억 미만		5.5	
30억 - 50억 미만		5.0	
50억 - 100억 미만	5.5		12.0
100억 - 300억 미만		4.5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1000억 이상	4.5		9.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직접공사비) x 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요율	구분	요율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51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32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그 외	0.1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중건설공사	2.35	5,400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일반건설공사(을)	2.10	
	중건설공사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산재보험료]

(노) x 3.7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1-95호(2021.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700억 이상	1.57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30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1.13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1.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1.03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1.02
[7등급] 14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1.01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의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직노) x 3.495	(건강보험료) x 12.27	(직노) x 4.5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율

구분	요율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댐	1.1
택지개발	0.6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주택 외 건축	0.5
조경	0.3
기타토목(하천 등)	0.8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x 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50억 미만	0.081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300억 이상 증심·증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300억 이상 증심·증평제(건축)	0.068
턴키·대안공사	0.084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70억 미만	[직공비x0.0141%]x공기(년)
70억 이상 - 120억 미만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500억 이상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4. 2023년도(5차년도) 통합사업비 산출 근거 및 정산방법

1) 경영주체의 사업추진인력 구성 및 역할(직접인건비)

○ 선도 산림경영주체의 추진 조직 구성

- 전문경영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과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담팀 별도구성하며 경영전문가, 사업담당, 경영보조인력을 배치한다.(사무실 분리배치 및 결제라인 단순화, 경영 자율성 보장)

  * 경영주체의 타 업무와 겸임 불가

- 경영주체 내에 경영전문가 1인, 경영(사업)담당 1인, 경영보조인력 1인에 의한 선도산림경영팀을 구성

  * 부득이하게 일정기간만 전담할 경우에는 전담한 기간만 선도사업비에서지급 가능(내부결재를 받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조달청이 발표하는 토목공사 요율 적용
- 기타 인건비 등은 조달청 제경비요율의 일반관리비에 해당

○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임자 자격요건

구 분	주요업무	자격요건
경영 전문가 (경영팀장)	- 선도단지 업무 총괄 - 시장분석 및 경영방향설정 - 소득증대 및 단지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단지 품질관리 등 전문경영	ㅇ 경영주체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또는 3년 이상 장기계속 근무가 가능한 경영주체 직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외부 전문가 · 산림조합의 지도원, 산림사업법인과 이에 준하는 기업 또는 단체 근무 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자로서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보유자 - 경영주체 직원 · 소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산림사업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인 경우는 지도원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사업담당	- 선도단지 사업 책임관리 - 산주 조직화 및 산주소통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 설명/평가 대응 - 인력관리	ㅇ 외부전문가 또는 경영주체 직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외부전문가 · 산림조합의 지도원, 산림사업법인과 이에 준하는 기업 또는 단체 근무 경력 합산 5년 이상인 자로서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보유자 - 경영주체 직원 · 소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산림사업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인 경우는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지도원 또는 직원
경영 보조인력	- 산주동의 - 홈페이지 등 관리 - 정산업무 등 담당	

2) 선도산림경영단지 전문경영주체 인건비 지원 기준

○ **단지경영주체의 전임자 인건비**

- 단지경영주체의 전임자 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한 업무 가중치에 의한다.
  * 오스트리아의 경영면적별 전문경영인력 배치기준과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 단지경영주체의 책임경영자 인건비는 대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 산림조합 지도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매년의 인건비 인상률(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함)을 반영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함.**

  * 기준금액('15년)

> · 경영팀장 1인의 인건비 기준 : 연봉 총액으로 60,000,000원
> · 경영담당 1인의 인건비 기준 : 연봉 총액으로 50,000,000원

- 경영주체의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중앙회)이고, **담당자가 산림경영지도원인 경우는 정부보조 지도원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함.**

○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임자 배치 기준(2022년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인력구분	년 지급액	비 고
경영전문가(경영팀장)	년 70,265,000원	산림청 산림자원과-1426(2022.03.07.) 선도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 일부개정 알림
사업담당	년 58,554,000원	
경영 보조인력	일 100,000원	

주 1) 본 인건비는 기준금액인 2015년 경영전문가 년 60,000,000원과 사업담당 년 50,000,000원에 매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주 2) 2022년 적용단가는 2021년 적용단가(경영전문가 69,295,000원, 사업담당 57,746,000원)에 2022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 1.4%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전문경영주체 경영전문가의 간접인건비 지원 기준

-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기준에 의해 간접작업임금, 간접공임, 대기임금, 휴업임금, 급료, 종업원상여 등으로 나뉘며,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인건비는 직접인건비의 조달청 토목공사 요율을 적용한다.
- 전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미흡이하로 평가된 단지는 경영책임자와 사업담당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미흡) 산림청에서 매년 시달하는 인건비 기준의 70% 지원
  * (부진) 산림청에서 매년 시달하는 인건비 기준의 50% 지원
  * 차액은 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3) 사업관리경비

- "사업관리"란 사업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휘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서 전문경영주체의 사업관리 활동은 산주의견수렴, 단지경영에 대한 총괄 기획, 운영은 물론 설계·감리 등 세부 사업을 발주 및 사업 추진 전반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사업관리비 산출방식에는 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산출방식이 있으나, 본 사업에는 실제 소요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 사업관리경비에는 여비교통비, 차량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회의비, 산지재해보험료등 사업관리를 위한 일체의 경비를 반영하되,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 효율적 현장관리 및 산주 의견 수렴 등 참여도 증대를 위해 단지 내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 등 간이시설을 임대해 사용한다.

4) 일반관리비

-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 또는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임원 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때 일반관리비는 개별적 파악이 어려우며,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기간수익에 총괄적으로 대응한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경영주체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를 말한다.
- 따라서, 본 사업에는 조달청 발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5) 부가가치세

- 대행사업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문경영주체가 선도산림경영 활용을 용역사업의 형태로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 단지조성을 위한 임도 등 세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 종류별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 부가세 납부 대상 사업 :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산림욕장, 수목원조성·관리사업 등

- 이 경우 부과 대상금액은 인건비와 사업관리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 총원가에 대하여 10%를 적용하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므로 대행사업관리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다음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 산출 부가세 : {재료비+산출경비(기계경비+운반경비+가설경비)}×10%

6) 외주사업비

① 보조(위탁)사업자는 보조(위탁)사업의 내용 중 용역의 품질 또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외주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체의 관점에서 산주의 의사를 반영한 산림경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설계와 회계 전문가 위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등 다양한 외주 시행이 필요

② 외주사업 중 설계, 감리 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감리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통합사업비에 편성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 및 관리

-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개경쟁 원칙 적용
- 기술 능력이 뛰어난 기술자가 참여토록 지역제한시 시·도 단위로 확대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 품질향상 대책(산림청 산림자원과-1153호, 2019.2.27.)

○ (설계검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검수가 불가능한 경우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 검수

- 최종검수는 경영책임관이 실시하되 운영협의회에 설계검수 지원단을 두고 검수의견을 받아 최종 검수
- 설계검수 지원단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 경영주체, 지자체, 전문가 중 3인을 지원단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별도 구성
-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은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완료 10일 이전에 감리자를 선정하고, 전년도 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이전에 감리 발주하여 감리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참고

* 선도 산림경영단지 클린경영 대책(산림청 산림자원과-5260호, 2020.9.8.)

○ (회계감사) 경영주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회계감사 유형 중 원칙적으로 이행감사(사업비정산 감사)를 실시

*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보고서(이행감사)를 제출

* 경영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비는 경영주체가 부담

* 회계감사의 유형

· 업무감사 :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 절차를 검토 · 이행감사 :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 재무제표감사 :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

○ (산림사업의 외주사업 비율)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보수포함) 등 산림사업비의 20%이상은 외주사업비로 편성

- 외주사업비 중 개소당 또는 계약건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국가(지방)계약법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

③ 사업비의 산정 및 원가계산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본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7) 단지조성 직접사업비

- 직접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해 직접 또는 위탁 시행해야 할 임도, 숲가꾸기, 임목수확,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 사업비는 해당사업 설계·감리 시행지침 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한다.

가. 조림사업은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따른다.

나.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따른다.

다.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벌채기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따른다.

라. 입목의 굴취와 이식사업은 "건설표준품셈 조경공사"를 따른다.

마. 임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바.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세부시설기준"을 따른다.

사. 산림복합경영 등 단기소득사업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산림복합경영)와 관련하여 재배 기반조성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가능하다.
- 경영주체 전임자는 단지 내 산주가 산림복합경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안내
- 다만,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계획(2019.3, 산림청)」에 따라 추진하는 단지별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설계·조성 및 3년 이내의 사후관리비를 선도단지 사업예산으로 집행가능)
- 각 사업비에는 사업별 제경비(이윤포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작성(설계금액)하여야 한다.
- 직접사업비는 설계금액의 88%이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행, 정산하여야 한다.
- 실행예산 편성 시에는 장비 임차료 등의 실 집행 비용 정산을 위해 비목간(재료비, 노무비, 경비)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총액은 설계금액의 88%를 초과할 수 없다.

2023년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비 및 사업계획(안)

○ 사업관리비

사 업 관 리 비	
세부항목	금액
인건비	118,842천원
사업관리경비	63,136천원
일반관리비	10,919천원
부가가치세	-
합 계	**192,897천원**

○ 외주사업비

외 주 사 업 비	
세부항목	금액
세부설계용역비	30,000천원
전문가위탁비	4,400천원
합 계	**34,400천원**

○ 직접사업비 / 기반시설조성사업(임도신설)

직 접 사 업 비(기반시설조성사업)	
사업량	금액
0.64km	**204,000천원**

○ 직접사업비 / 임도보수사업

직 접 사 업 비(임도보수사업)	
사업량	금액
1식	64,000천원

○ 직접사업비 / 풀베기사업

직 접 사 업 비(풀베기사업)	
사업량	금액
48.8ha	102,480천원

○ 직접사업비 / 특화임산물재배단지

직 접 사 업 비(특화임산물재배단지)	
사업량	금액
1.0ha	160,000천원